

의안번호	2207985
의 퇴 인	이개호 의원
회 답 일	2025.04.07.
추계번호	25C0676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급담당 교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9,486억 2,500만원, 2029년 9,668억원 등 5년간 4조 6,241억원(연평균 9,248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146	—	—	146	—	292	58.4
실태조사 (안 제7조)	353	—	—	353	—	706	141.2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	1.4	1.4	1.4	1.4	1.4	7	1.4
교원 추가배치 (안 제17조)	948,124	871,907	902,301	933,915	966,798	4,623,045	924,609
합 계	948,625	871,909	902,302	934,415	966,800	4,624,050	924,810

주: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향상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교육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7조(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은 4년마다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농어촌 교육 지원 관련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4	안 제8조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 회)	(제1항)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촌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5	안 제9조 (시·도 농어촌학교교육지 원위원회 등)	(제1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촌 학교 교육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점검 4. 시·도 교육여건에 적합한 농어촌 학교 교육프로그램 내용 개선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 (학교의 설치·운영)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중 면 단위 지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의무규정
7	안 제14조 (방과 후 학교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기와 적성의 계발, 예술 및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는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초등학교에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돌봄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5조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연구 및 성과 분석 2.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학교 우수 운영사례 홍보 3.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4.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교육과정의 연구·개발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재량규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농어촌 특성에 맞는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지역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학교 프로그램 소개 및 홍보 2.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재량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6조 (교육환경의 개선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0	안 제17조 (학급담당교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2명의 학급담당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1	안 제18조 (농어촌 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1항) 교육감은 농어촌 학교 교직원이 높은 공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행정업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8조 (농어촌 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12	안 제20조 (농어촌 학교 학생 지원)	농어촌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으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의무규정
13	안 제26조(조세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 교원 및 학생의 학부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향상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 아울러 제정안에 따라 이루어질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구체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지출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함
2	안 제5조(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3	안 제7조(실태조사)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8조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5	안 제9조 (시·도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 등)	—	제정안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해당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음 · 제정안 부칙 제2조는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시·도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직의 명칭 및 소속이 변경되나, 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이는 기존의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음
6	안 제10조 (학교의 설치·운영)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면 단위 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 1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각급학교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은 각급학교 등이 소재할 지역의 실정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가정 하에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 · 참고로, '24년 기준 전국 234개의 면 지역이 있으며 면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는 각각 1,441개, 1,432개, 686개, 281개임
7	안 제14조 (방과 후 학교 등)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과 후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 돌봄교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함 · '24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4,325개교 중 약 95%에 해당하는 4,107개교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 중임 · 한편, 교육부는 기존 초등돌봄교실 사업을 늘봄학교 사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25년부터는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4조 (방과 후 학교 등)	×	· 따라서 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함
8	안 제15조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 등)	×	제정안은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지역센터를 설치·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러나, 제정안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므로 재정지출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함
9	안 제16조 (교육환경의 개선 등)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으로 국가 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 디지털교육혁신사업으로 구분되며 '24년 총 2조 4,867억원이 교부됨 · 제정안에 따라 특별교부금 액수가 증액된다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나, 증액 여부가 불투명하고 증액되더라도 구체적 규모를 산출하기 어려움
10	안 제17조 (학급담당교원의 배치)	○	
11	안 제18조 (농어촌 학교 교직원의 우대)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농어촌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여건 개선, 주거편의 제공을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해당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와 동일한 조문으로, 제정안 부칙 제2조는 동법 제26조의 삭제 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조문을 제정안에 명시한 것에 불과 하여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음 ·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승진가산점 부여, 관사 지원, 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12	안 제20조 (농어촌 학교 학생 지원)	—	제정안은 농어촌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생으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며, 동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등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운영 중임 · 또한,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전국 각급학교 등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이 규정하려는 사항은 이미 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음
13	안 제26조(조세감면 등)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학교 교원 및 학생의 학부모에 대하여 조세 감면이 가능함을 규정함 · 제정안이 시행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감면한다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조세 감면 여부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지출 산출이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①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②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사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안 제7조), ③농어촌학교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8조) 및 ④학급담당 교원의 추가배치(안 제17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5조)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4년 주기로 계획 수립 비용이 지출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5조는 5년마다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이에 근거해 2005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최근 제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3월 27일 발표되었으므로 해당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5년부터 연구용역비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7조)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4년 주기로 실태조사 비용이 지출되며,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8조는 5년마다 농어업인 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문화 예술 여건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
 - 이에 농촌진흥청은 5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4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해당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5년부터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8조) 유사 위원회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지역개발위원회”)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0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지역개발위원회는 과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심의하며,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의결함
 - 따라서 지역개발위원회의 회의실적 및 수당을 준용하여 산출
 - (안 제17조) 학급담당 교원의 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농어촌 학교의 학급 및 교원 수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며 인건비, 법정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의 합으로 추계
 - 안 제10조에 따라 학교가 추가 설치·운영될 수 있으나, 교원이 신규 배치되는 농어촌 학교 및 학급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음을 가정
 - 2025년에 신입 교원을 일괄 충원하여 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

후 5년간 총 2억 9,200만원(연평균 5,840만원)으로 추계

- 제5차 기본계획은 인쇄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제4차 기본계획 사례를 준용함

[표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항목	금액
제4차('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합 계	146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70
	인쇄비	23
	업무협의 등	53
제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합 계	126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76
	업무협의 등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표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146	-	-	146	-	292	58.4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실태조사(안 제7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7억 600만원(연평균 1억 4,120만원)으로 추계

- 농촌진흥청은 5년 주기 부문별 심층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2024년 3억 5,300만원이 소요됨
 - 5년 주기 부문별 심층조사는 경제·문화·여가, 교육·가족·공동체, 보건의료·복지, 경관·안전, 종합 5개의 부문을 매년 조사하는 방식임

[표 4] 실태조사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실태조사(안 제7조)	353	-	-	353	-	706	141.2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8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700만원으로 추계

- 위촉위원에게 지급되는 위원회 참석 수당 총액을 추가재정소요로 가정하고, 위촉위원 수에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추계
 - 위원회 설치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위촉위원 수) 안 제8조제3항제2호는 위원장이 7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촉위원은 7명이라 가정
- (위원회 참석 수당)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조하여 20만원으로 가정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5만원 내로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5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회의 횟수) 지역개발위원회는 '22~'24년간 매년 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연간 회의 횟수는 1회로 가정

[표 5]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운영 비용 추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위촉위원 수(A 명)	7	7	7	7	7	-	-
위원회 참석 수당(B, 천원)	200	200	200	200	200	-	-
회의 횟수(C, 회)	1	1	1	1	1	-	-
추가재정소요(AxBxC, 천원)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1,400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학급담당 교원의 추가배치(안 제17조)

- 농어촌 학교에 학급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 법정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의 합으로 산출하며, 2025년 9,481억 2,400만원, 2029년 9,667억 9,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조 6,230억원(연평균 9,246억 900만원)으로 추계

[표 6] 학급담당 교원의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인건비	720,670	744,691	769,657	795,606	822,577	3,853,200	770,640
법정부담금	79,319	82,838	86,518	90,366	94,391	433,433	86,687
기본경비	42,697	44,378	46,126	47,943	49,831	230,975	46,195
자산취득비	105,437	-	-	-	-	105,437	21,087
합 계	948,124	871,907	902,301	933,915	966,798	4,623,045	924,6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인건비

- 인건비는 신규 충원에 따른 임금과 학급담당 교원에 대한 학급담당 수당의 합으로 하고, 신규 채용 교원 수, 수당 지급 대상자 수에 각각 봉급 및 수당을 곱하여 산출
 - 각급학교의 학급담당 교원에게는 학급담당 수당이 지급됨
- (신규 채용 교원 수) 농어촌 학교의 교원 중 교장, 교감을 제외한 인원을 우선 배치하되, 부족한 인원은 신규 충원함을 가정
 - 학급당 2명의 교원이 필요하므로 학급 수에 2를 곱한 값에 현재 교원 수를 제외한 값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봄
- (수당 지급 대상자 수) 기존에 1명의 교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학급당 1명씩의 교원이 추가 배치되므로, 학급 수에서 기존에 2명의 담당 교원이 배치된 학급의 수를 제외해 산출
 - 전남 27개 학급, 충남 252개 학급에는 이미 2명의 담당 교원이 배치되어 있어 해당 인원은 수당 지급 대상자 수에서 제외함

[표 7] 대상자 수 산출

(단위: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학교 수(A)	2,547	1,206	673	4,426
학급 수(B)	26,682	10,296	9,431	46,409
현재 교원 수 ¹⁾ (C)	34,413	18,379	18,538	71,330
신규 채용 교원 (Bx2-C)	18,951	2,213	324	21,488
수당 지급 대상자 ²⁾	26,674	10,115	9,341	46,130

주: 1) 현재 교원 수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수치임

2) 수당 지급 대상자 수는 학급 수에서 기존에 2명이 담당 교원이 배치된 학급을 제외한 수치이며, 대상 학급 수는 전남지역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1개, 충남지역 초등학교 8개, 중학교, 156개, 고등학교 88개임

자료: 교육부 통계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급 및 수당) 보급은 교육공무원의 보급을 준용하되 신규 임용되는 정교사의 기산호봉이 9호봉임을 고려하고, 학급담당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20만원으로 함
 - 보급은 추계기간 동안 매년 최근 3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인 1.9%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호봉 상승을 반영함
 - 학급담당 수당은 '16년 이후 13만원으로 일정하다가 '24년 20만원으로 상승하였음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일정함을 가정

[표 8] 인건비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신규 교원 임금	609,958	633,979	658,945	684,894	711,865	3,299,640	659,928
학급담당 수당	110,712	110,712	110,712	110,712	110,712	553,560	110,712
합 계	720,670	744,691	769,657	795,606	822,577	3,853,200	770,640

주: 단순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법정부담금

- 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합으로 하며 임금에 해당 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
 -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 건강보험료율은 '25년 현재 3.545%에서 추계기간 동안 매년 '23년 인상률인 1.43%씩 상승한다고 가정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5년 현재 0.459%에서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9%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

[표 9] 법정부담금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공무원연금	54,896	57,058	59,305	61,640	64,068	296,968	59,394
건강보험료	21,623	22,796	24,032	25,336	26,710	120,498	24,100
장기요양보험료	2,800	2,984	3,181	3,390	3,613	15,968	3,194
합 계	79,319	82,838	86,518	90,366	94,391	433,433	86,687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신규 채용 교원 임금에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른 인건비 대비 물건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10] 기본경비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기본경비	42,697	44,378	46,126	47,943	49,831	230,975	46,195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교원을 신규 충원하는 2025년에만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신규 채용 교원 수에 1인당 자산취득비를 곱하여 산출
- (신규 채용 교원 수) 인건비와 동일하게 학급 수에 2를 곱한 값에 현재 교원 수를 제외한 값으로 함
- (1인당 자산취득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함

[표 11] 자산취득비 추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신규 채용 교원 수 (A, 명)	21,488	-	-	-	-	-	-
1인당 자산취득비 (B, 천원)	4,907	-	-	-	-	-	-
추가재정소요 (AxB 백만원)	105,437	-	-	-	-	105,437	21,087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